

결 정

2018 - 3014 신문윤리강령 위반
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

주 문

국민일보(kmib.co.kr) 2017년 11월 28일자(캡처시각) 「‘영하 32도’ 찬물 뒤집어쓴 채 얼어죽은 개 (영상)」 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1.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<캡처시각 17. 11. 28. 22:56>

『영하 32도』 찬물 뒤집어쓴 채 얼어죽은 개 (영상)

입력 : 2017-11-28 14:51/수정 : 2017-11-28 15:05

개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에 적신 뒤 밖으로 쫓아내 얼어 죽게 만든 사

건이 발생했다.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32도였다.

27일(현지시간)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야쿠츠크(Yakutsk) 한 개집에서 차가운 물에 젖은 상태로 얼어 죽어가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.

발견 당시 개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킁킁거리고 있었다. 녀석은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로 구조대원을 쳐다보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.



사진=더 시베리안 타임즈 (The Siberian Times)

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안락사 처리됐다.

개를 보호했던 한 동물 보호 운동가는 “정말 살고 싶는데, 죽어가는 동물의 눈빛을 본 적 있는냐”라며 “녀석의 눈빛이 그랬다. 우리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다”고 말했다.



사진=더 시베리안 타임즈 (The Siberian Times)

현재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개를 외부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한 개주인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. 현재 러시아 국민 1만 명이 동참했다.

이들은 “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죽은 사건이 아니다. 그 개주인은 수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”며 “오늘 개 한 마리가 죽었다. 내일은 또 다른 개가 죽어갈 것”이라고 호소했다.

개주인의 이름과 나이, 직업 등의 신상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.



최민우 기자 cmwoo11@kmib.co.kr」

<<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1937915&code=61131611&sid1=int&cp=nv2>>

※참고

<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ZLldzq2QFk>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러시아에서 개 주인이 개를 물에 적신 뒤 밖으로 쫓아내 얼어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. 그러면서 개가 죽어가는 모습을 담은 25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했다.

동물학대를 고발한다면서 죽어가는 개 사진을 두 장 게재한 것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첨부한 행위는 클릭 수를 높이려고 선정적으로 편집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. 동영상은 현재 볼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노출됐다.

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송 호	정송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강 희	강희
	김 영 모	김영모
	박 현 갑	박현갑
	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④(선정보도의 금지) 기자는 성범죄,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.